

『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센터의 정의(안 제2조)
- 주민자치센터의 기능(안 제5조)
- 주민자치센터의 운영(안 제7조)
- 사용료(안 제10조)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20조)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21조)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,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우리시 27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임.
- 주민참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, 정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을 추진해 왔으며, 주민자치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에 힘쓰고 있음.
- 2019. 7월말 기준, 도내 332개 읍면동 중 23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주민자치센터 설치율이 많이 저조한 상황으로, 경상북도는 도내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지자체에 올해까지 근거조례 제정 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음.
 - ※ 도내 조례 미제정 시군 : 구미, 포항
 - ※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: 경북 69.3%, 전국 90%(2019.7월말 기준)

○ 주요 내용을 보면,

-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, 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 안 제2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현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, 복지, 여가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도에 달려있는 만큼,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 관변단체의 역할 등 관계정립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·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이웃과의 교류, 협동, 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